

## 영국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의무의 기원과 최근 동향에 관한 고찰\* - Carter v. Boehm 사건을 중심으로 -

박지문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연구원

## A Study on the Origin and Current Status of the Utmost Good Faith in the Marine Insurance Act -Focused on the Carter v. Boehm case-

Jee-Moon Pak<sup>a</sup>

<sup>a</sup>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South Korea

Received 7 March 2019, Revised 21 March 2019, Accepted 21 April 2019

### Abstract

Article 17 of the Marine Insurance Act (MIA) states that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and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 In the Carter v. Boehm case, Lord Mansfield was the first to provide a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which is analyzed here. This judgement not onl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Modern English Insurance Act, but it also influenced the draft of the English Insurance Act of 2015, which aimed at correcting distortions that occurred during the application of statute law and common law thereafter.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pplied between Lord Mansfield's insured and insurer presents the context of information asymmetry of the insured and insurer entering contracts. In the abs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in contrast to the effects of being in both sides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lleviating the duty of disclosure of the insured, and it is also clear that the warning of the severity of the retrospective avoidance of th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and the need for its limited application have already been pointed out.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retrospective avoidance,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should be understood as a concept limited to the duty of disclosure before a contract is concluded

**Keywords:** Duty of Disclosure, English Insurance Act 2015, Marine Insurance Act, The Carter v. Boehm Case, Utmost Good Faith

**JEL Classifications:** F1, F19

\* This paper complements the result of a research conducted as a visiting research fellow of the Graduate School of Commerce, Waseda University during the period from December 1, 2016 to February 28, 2017.

<sup>a</sup> First Author, E-mail: jeemoonpapak@daum.net

© 2019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 I. 서론

대개 국가의 계약법상 계약체결단계뿐만 아니라 계약이행단계에서도 일반적인 선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계약법은 선의를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Atiyah, 1995). 영국계약법에서 사실의 기망 또는 부실표시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엄격한 법원칙이 적용되지만 계약법원칙에 따르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할 때 계약당사자는 스스로 판단 및 결정해야 한다(Kim Sun-Chul and Lee Kil-Nam, 2009). 이에 따라 계약당사자 입장에서 이익 극대화를 위한 관련 정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을 뿐이며 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관련 정보 제공에 따른 도움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Shin Gun-Hoon, 2006).

이러한 영국계약법의 특성상 일부의 경우에만 상대방의 자발적인 선의를 요구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은 그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다. 영국의 일반계약법과 구분되는 보험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에 대해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중대한 사실에 대해 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Shin Gun-Hoon, 2006; Kim Sun-Chul and Lee Kil-Nam, 2009).

영국은 보통법·판례법·불문법 국가이지만 그 예외로 1906년에 해상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제정법인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 MIA)을 제정하였는데, 즉 이것은 당시의 보통법을 성문법화한 것이다. MIA에서는 의무와 관련하여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최대선의의무(duty of utmost good faith)라고 인식되는 요구사항은 MIA 제17조-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MIA 17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이란 계약법의 일반원칙과 구분하여 최대선의계약이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무에 대한 상호적·호혜적인 성격을 내포하며 동시에 의무위반이란 계약의 취소라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Shin Gun-Hoon, 2006; Han Chang-Hi 2017a). 영국계약법 상 계약의 취소는 계약체결시점으로 소급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지위는 계약체결 전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Clarke and Soyer, 2017).

제17조(최대선의의무규정)와 제18조(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원천을 보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Carter v. Boehm 사건에서 Mansfield 경의 판결에 이르게 된다. MIA의 기안자인 Chalmers의 해설서에서는 제17조의 직접적 참고로서는 1880년 Blackburn 경의 Brownlie v. Campbell 사건을 들 수 있지만, 주석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Carter v. Boehm 사건이다. 또한, Carter v. Boehm 사건에서 MIA 제정까지의 140년 동안에 특히 19세기 후반의 판례에서 Mansfield 경의 견해가 확대해석된 것에서 MIA 제17조의 최대선의무란 Mansfield 경이 Carter v. Boehm 사건이 시사한 선의(Good Faith)보다 넓은 개념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Mansfield 경은 선의의무를 피보험자·보험자 상호의 의무라고 설명하였지만 제17조, 제18조의 의무위반의 효과에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는 구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며(Gilman, et al., 2013), 부당하게 보험자보호에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오래 동안 있어 왔다(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2014).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5년 영국보험법에서는 이 비판도 포함하여 최대선의의무의 위반에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것을 폐지함과 동시에 계약 전의 고지의무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고지가 있는 경우에 추가질문의무를 부과한 외에 All or Nothing의 구제를 다양화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Hosi, 2015a). 이 제정법인 영국보험법의 110년만의 개정의 시기에, 최대선의의무의 효과에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할 것인지 또한 보험계약 성립 전의 고지의무의 한도(이 점은 2015년 영국보험법에서도 규정은 불변이다)를 어디까지로 파악해야 할지, 더욱이 최대선의의무란 무엇인지를 고려함에 있어 시의적절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Koh Jae-Jong (2008), Shin Gun-Hoon (2006/2011), Lee Yun-Seok (2010), Lim Soo-Min (2013), Chung, Dae (2005), Jin Hong-Ki (2016), Han Nak-Hyun (2009), Han Chang-Hi (2017), Lowry (2009), Rose (2007), Soyer (2003)에서는 최대선의의무의 사적 고찰과 범위, 영미의

비교분석, 개정사항, 사례분석 등을 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최대선의의무의 기원이 된 Carter v. Boehm 사건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 이 의무의 현대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는 것에 기존의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rter v. Boehm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내용을 살펴 본 후 이 사건에 대해 판결한 Mansfield경의 판단내용과 법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다. 또한 그 판결내용을 분석한 후 최대선의의무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II. Carter v. Boehm 사건의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내용

### 1. 사실관계

250년 후에 Carter v. Boehm 사건판결을 해석할 때 당시의 역사상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몇 가지 설명하고자 한다(Watterson, 2008). 영국과 프랑스 간의 7년 전쟁의 전쟁국면은 인도까지 확대되어 1758년 12월에 프랑스 육군은 영국동인도회사의 인도에서의 주요 거점인 Fort St. George(현재의 Chennai)에서 전쟁을 개시하였지만 해가 바뀌어도 함락되지 않고 전쟁상황은 일변하여 영국 우위로 바뀌어 지고 있었다.

인도에서의 프랑스군은 자금난에 빠지게 되어 악전고투하는 육군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프랑스 해군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육군의 지원을 할 수 없다면 프랑스해군은 어떤 일도 하지 않기 보다는 기회주의적인 자금 벌기의 행동에 나서 Fort Marlborough(이하, Fort M.이라 한다)을 공격하지 않을까하는 것이 Carter의 우려의 배경이었다. 그 후 1759년 8월 인도에서 영국으로 귀국도중의 Wynch(Carter의 원래 상사)로부터 1759년 2월의 편지를 Carter가 수령하였다. 그 내용은 희망봉 정박중에 프랑스인으로부터 1758년 프랑스군이 Fort M.의 습격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주의를 해태하여서는 안된다는 정보였

다. Wynch는 이 내용을 동인도회사 본사에도 송부하였다.

그 후 1759년 8월 프랑스 해군이 인도 외해에 늦게 출현한 것과, 1760년 초엽의 폭풍우로 대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 Carter가 부보지시를 한 시점에서는 모를 이유도 없었다.

더욱이 유럽해역에서 1759년의 여름과 가을에 두 가지의 거대해전이 있었으며 프랑스가 제해권(制海權)을 상실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Fort M.으로의 공격을 실행한 것은 Wynch가 경고한 정규군의 프랑스 해군이 아니라 프랑스인인 D'Estaing백작이 꾸민 사략선(privateer)으로 페르시아만에서 한번 폭동이 있을 후 동중국해에서의 사략을 의도하고 있었지만까지 이를 수 없게 되어 도중에 있었던 영국의 스마트라섬의 거점을 습격한 임기응변적인 것이었다.

현재 Carter v. Boehm 사건으로서 인용되는 것은 English Reports에 수록된 것이며 그 원전은 Burrow's King's Bench Reports이다. 그것에 수록된 판결은 상인의 배심원에 의한 평결을 바탕으로 피보험자에게 승소로 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의한 판단이다. 이 사건은 영국 동인도회사·수마트라섬의 출장거점인 Fort M.의 거점장·차석총독(Deputy Governor)인 George Carter는 원래 유럽의 적의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주민의 공격에 의한 저항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었다(Koh Jae-Jong, 2008). 그런데 유럽의 적의 공격에 의한 Fort M의 함락의 발생에 대해 부보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프랑스인의 사략선(privateer)에 의한 공격으로 Fort M.은 함락되어 보험금청구가 이루어졌다. 그것에 대해 보험자는 계약체결 전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다(Han Nak-Hyun, 2009). 또한 250년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정보의 전달방법이 현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며 스마트라섬에서의 통신이 런던에 도착하기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5개월이 소요된다는 등 정보의 시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시기를 계약 때부터 7개월 소급하거나 사고발생이 계약일의 1개월 전이라는 것이다.

1759년 9월 런던으로 향해 출항하는 선박이 있어 Carter는 동인도회사에 Fort M.방위의 궁

핍한 실상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송부함과 동시에 별도의 편지에서 런던 주재의 남동생에게 부보하도록 지시하였다.

1760년 4월 D'Estaing백작의 사략선(privateer)에 의한 공격을 받아 Fort M.은 함락되고 Carter는 포로가 되었다(이 정보는 당연 이 시점에서는 런던에서는 알 수 없었다).

1759년9월 발송의 편지는 1760년 4월 중순에 런던에 도착하여 남동생이 5월 9일에 보증을 계약하였다. 보험대상의 사안은 1759년 10월 16일부터 1년간 유럽의 적의 공격에 의한 Fort M.의 함락이었다. 그런데 위협에 대한 특단의 개시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 2. 당사자의 주장내용

### 1) 보험자 측의 주장

계약체결 전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아래의 세 가지 점의 은폐를 주장하였다. 즉, ① Fort M.의 방비(防備)의 취약성, ② 프랑스 군에 의한 공격의 확률, ③ Wynch의 편지의 존재이다.

그 증거로서 1759년 9월에 발송된 동인도회사 본사로의 보고서와 남동생에게 보낸 편지가 제출되었다.

### 2) 논쟁이 없는 사실

Fort M.은 원주민에 의한 봉기에 대한 방어를 예상한 시설로서 무장한 사병이 배치되어 있지만 유럽의 군에 의한 공격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 원래 군사시설이 아니라 상업시설에 불과하다는 것에는 논쟁이 없었다.

### 3) 피보험자 측의 항변

위의 상황은 런던에서 거래하는 상인에게 모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고지해야 할 것은 사실뿐이며 사실에서 도출된 예측은 고지할 필요가 없다.

### 4) 그 밖의 쟁점

“Interest or no interest, without benefit of salvage. Against the loss of Fort Marlborough in the Island of Sumatra in the East Indies, by its being taken by a foreign enemy”라는 보험대상이 되는 사건의 해석이 논쟁되었다. 보험자는 적의 공격에 의한 Fort M.의 함락이 피보험사고라고 주장하였지만 원고는 공격의 발생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상인의 배심원에 의한 원심은 원고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함락이 조건으로 된다면 Fort M.의 취약성이 보험사고의 발생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피보험자는 잠시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이 전체이며 의도된 피보험사고는 공격의 발생이라고 주장하였다. 보험의 형식은 도박보험이 되어 실제 손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고의 발생을 근거로 보험금이 지불된다고 하였다.

## Ⅲ. Mansfield경의 판단내용과 법에 대한 정리

### 1. Mansfield경의 판단내용

보험계약은 1760년 5월에 사인되고 보험대상이 되는 사고는 1759년 10월부터 1년간에 Fort M.이 “was or would be taken, by an European enemy”이었다. 사고의 발생확률은 공격이 발생할지의 여부이며, 공격이 발생하면 저항능력은 없었다.

1760년 5월에 런던에 있었던 보험자는 1759년 5월 Fort M.에 있었던 사람보다 발생확률을 훨씬 잘 판단할 수 있었다. 즉, ① 유럽의 전국(戰國)에서의 승리를 알고 있었다. ② 영국과 프랑스 양국이 동인도에 보내진 해군력도 알고 있었다. ③ 그 결과 제해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④ 동인도 정세와 Fort M.의 상황에 대해 1759년 5월에 Fort M.에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부보지시를 전달한 선박을 통해 모두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 ⑤ 그 선박이 동인도회사에 대한 차석총독의 편지를 수송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⑥ 네덜란드

가 적대시할 가능성도 알고 있었다.

이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자는 그 위험을 인수하였다. 1759년 9월 Carter가 알고 있었던 프랑스의 공격계획이 있었다면 그것은 보험자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한 위험을 변질시킨 것이다. 그러나 Carter는 그러한 것은 몰랐으며 실제로 계획 등은 없었다. D'Estaing백작의 보석과 네덜란드의 조력을 받은 그의 보석을 채굴하는 운명의 장난으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이 상황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이 문맥을 고려하면 고지의무위반의 항변을 보다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1) Fort M.의 상황

보험자는 이 보험이 차석총독인 Carter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차석총독은 Fort M.의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지만,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것도 알고 있었다. 거점장인 Carter가 부보한 이상 위험을 느끼고 있었을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질문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정보고지의무를 자신이 인수한 것이 된다. 이 정보는 Carter만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조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보험자가 말할 수 있는 것은 Fort M.이 요새로서 있어야 할 상태라고 보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지만 그 상태란 무엇인지이다. 모든 증인은 Fort M.은 현지주민의 붕기 정도로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배심원은 피보험사안은 공격에 견딜 수 있는지가 아니라 공격이 발생할지 여부라고 평결하였다. 이 법원도 증거에 비추어 배심원 판단에 동의하고 있다. 요새의 상황은 현지주민에 의한 공격에 대해서만 중요하며, 따라서 이 사건의 피보험사안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다.

### 2) 프랑스군에 의한 공격의 가능성

프랑스 해군은 육상전투부대의 엄호를 할 수 없다면 기회주의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Carter의 우려는 이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다. 이것은 전국(戰國) 전반에 대한 Carter의 예측

이다. 전쟁에 패한 프랑스군이 승리국의 영토를 공격한다는 것은 대담한 시도이다. 그 실험성은 동인도의 영국 해군력 여하이지만 그것은 1759년 9월 Fort M.의 Carter보다 1760년 5월 런던보험자 쪽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 3) 1759년 2월 편지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

이 정보의 신빙성 자체도 의문이며 신빙성이 있었다고 해도 1758년에 실행되지 않았던 계획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항로에 해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이지만 1758년 거기에 해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기가 아니다. 1759년에도 있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험을 경감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2. Mansfield경의 법에 대한 정리

(i) 보험은 사행계약이며 발생확률계산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피보험자만이 알 수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지내용을 신뢰하기 때문에 정보의 은폐는 사기이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ii) 특히 비공개는 의도적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것도 있지만 보험자는 기만을 당했기 때문에 보험은 무효가 된다. 합의 시에 전제가 되는 위험과 이질의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iii) 마찬가지로 항해원료를 보험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그것은 인수한 항해보험도 무효이며 보험료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iv) 이 원리원칙은 모든 계약과 거래에 적용된다. 선의는 당사자 쌍방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을 은폐하고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믿을 상대를 거래에 개입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쪽의 당사자도 양당사자가 마찬가지로 판단을 추가할 수 있는 사안을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 침묵과 은폐를 피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한 상대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는 것이 없는 것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은폐이다.

### 3. 고지의무의 예외사항

고지가 불필요한 사항으로는, ① 보험자가 어떤 수단을 통해 알았는지를 불문하고 알고 있어야 할 사항, ② 보험자가 알고 있어야 할 것, 자신이 조사하거나 고지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항, ③ 위험을 감소하는 사항, ④ 일반 정세와 예측, ⑤ 자연재해의 요인, 항해의 곤란함과 계절요인, 정치정세, ⑥ 보험자가 정보를 포기한 사항 등이다(MIA 제18조 제(3)항)(Clarke and Soyer, 2017; Jeong Hae-Seok and Cheong Yeong-Seok, 2015; Han, Chang-Hi, 2017b).

사유의 무장선택의 보험을 인수할 경우 원정을 가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선지가 고지되지 않아도 정보고지를 포기한 것이 된다. 3년 계약이 인수된다면 2년째까지의 어떤 상황도 고지할 필요는 없으며, 이로 (deviation)를 허용하는 항해보험이라면 이로의 고지를 할 필요도 없다. 자연현상과 정치정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며 판단력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해야 하며 이들에 대해 어느 쪽의 당사자도 자신의 판단과 예측을 고지할 필요는 없다.

고지의무를 양당사자에게 부과하는 이유는 사기의 방지이며 선의의 권유이다. 일방이 비밀리에 알고 있고 타방이 모르며 그 정보의 존재를 의심할 이유도 없는 경우이며 계약을 변질시킬 사실에 적용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수 시의 모든 상황에 비추어 정당한 표시의무가 이루어졌는지, 악의가 있는 은폐가 이루어졌는지 의도적이지 아니지만 합의된 위험을 변질시키는 비교지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 IV. 판결내용의 분석 및 시사점

### 1. 소급하여 무효라는 규범성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보험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의 규범성은 사행계약인 보험계약의 사건발생확률에 대한 산출 계산의 기준이 되어야 할 정보가 피보험자에게 편재되

어 있는 것에 유래한다(Clarke, Burling and Purves, 2009). Mansfield경이 판결 중에 규범성의 원천으로서 유일하게 열거하고 있는 것도 사행계약에서의 정보의 편재이다.

#### 1)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으로서의 특징

계약이행단계에서 최대선의의무가 유효한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부터 상황, 기간, 그리고 의무위반의 효과까지 계약당사자 간의 형평에 영향을 준다.(Choi Mi-Soo, 2017). 그 이유는 의무위반의 효과는 계약을 위반하는 당사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 소급적인 취소와도 같다.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의무부담자라고 생각했을 때, 의무에 대한 취소의 적용여부는 피보험자의 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Shin Gun-Hoon, 2006).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준수될 것을 요구한다. 보험계약도 사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Chung Dae, 2005). 그런데, 보험지급의무란 이미 보험자는 보험료를 수령한 후에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을 갖고 있다. 보험계약이란 우연한 사고 발생을 기본적인 전제로 이행되는 사행계약이다. 계약체결 당시에 보험자가 계약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허위로 고지하여서는 안되며 자기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정직하게 고지하여야 한다(Kim Seong-Wan, 2015). 따라서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 또는 최대선의계약성이 특히 강조되게 된다(Chung Dae, 2005).

보험계약에서 기본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는 상호간 신뢰가 유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다른 일반계약관계에 비추어 보면 보다 고도의 선의가 필요하게 된다. 즉,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이든 보험계약자이든 최대선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것을 요한다(Chae I-Sik, 2003; Chung Dae, 2005).

즉, MIA 제17조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

의에 기한 계약이고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해 최대선의가 준수되지 않을 때에는 타방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IA 제18조 이하의 고지의무 및 부실표시에 관한 구체적 규정도 계약체결단계에 관해서 최대선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대선의의무는 그것에 한정되지 않는 보다 광범한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Chung Dae, 2005; Saffarini, 2016).

보험법과의 관계에서의 선의의 개념의 역사는 Pan Atlantic Insurance Co. v. Pine Top Insurance Co. 사건에서의 Mustill경의 판결에서 검토되어 있고, 또한 개념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Bennett, 1999). 승인되어 있는 기원은 Mansfield경의 Carter v. Boehm사건의 판결이다. Mustill경이 지적한 바와 같이, Mansfield경은 선의의 일반원칙을 영국 상법에 도입하려고 시도하였고, 그러한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으나 보험계약과 같은 제한적 범위의 거래에서는 성공하였다(Chung Dae, 2005). Carter v. Boehm 사건에 대한 그의 판결은 보험계약체결 시에 그 선의의 일반원칙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것은 보험청약자와 보험자간의 정보의 불균형과 투기(speculation)에 기한 계약으로서의 보험계약의 성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는 불고지를 사기와 동일하게 보았다(Jin Hong-Ki, 2016). 그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의 묵비(the keeping back)는 사기이고, 따라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러한 은폐(suppression)가 어떠한 사기적인 의도가 없이 실수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보험자는 속임을 당했고,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그것은 영국 보통법에서의 실제적인 사기(actual fraud)가 아니라 일방당사자가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착오의 한 형태(a form of mistake)였다.

한편 정보의 편재자체는 체결 전의 보험계약의 문맥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예로서 중고주택의 매매를 고려하면 명백하다. 보험계약에 한정하여 자발적인 고지가 요구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Mansfield경 자신은 모든 거래에 선의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보급되지 않았다.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에 선의의무(자발적인 고지의무)와 그 위반의 경우에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것이 정착된 것은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계약의 안정성에 대한 요청과의 균형때문일 것이다. 보험계약에서는 대상사안이 발생하면 대가로서의 보험료의 몇 배나 급부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사행계약으로 되는 이유이다. 당연히 적절한 발생확률계산이 가능한 것이 담보되어야 한다(Lim Soo-Min, 2013). 그것에 대해 통상의 상거래에서는 등가거래(매도인, 매수인 쌍방에 있어 거래로 얻어지는 효용성이 균형)가 전제이다. 정보의 은폐의 경우 일방의 진정한 효용성은 별도로 배상 등으로 처리하고 계약의 안정성 확보의 이점 쪽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것은 정보편재의 교정수단에 불과함

최대선의의무의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 Mansfield경은 “Carter v. Boehm 사건에서 보험계약은 사행에 기초한 계약이다. 우연한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산출하는데 근거가 되는 특별한 사실은 거의 대부분 피보험자의 지식으로 편재되어 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고지에 의존하며 피보험자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신뢰 하에서 보험을 개시한다. 그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사기이며 결국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러한 은폐가 사기적인 의도 없이 착오에 의하여 발생되었더라도 보험자는 여전히 기망당한 것이며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그 이유는 실제로 수반된 위험은 합의 당시에 수반될 것으로 인식되고 의도된 위험과 상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하였다. 한편 Mansfield경은 사건의 선의원칙이 일체의 계약 및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이라고 설명하였다. Mansfield경에 의하면 어떤 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허위표시를 하거나 자신에 관련된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명백한 선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Shin Gun-Hoon, 2006). 이 판결에서 Mansfield경이 제안한 넓은 의미의 선의의무는 영국 보통법에서 지지를 얻

지 못하였고 계약법 상 일반원칙으로서 정립되지 못하였다. 즉, 영국 보통법 상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인하는 부실표시에 대한 엄격한 원칙은 존재하나, 고지원칙은 영국 계약법 상 일반원칙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Shin Gun-Hoon, 2006).

한편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것은 정보편재의 교정수단에 불과하며 최대선의라는 송고한 개념의 결과가 아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기 위한 주요한 요건은 객관적 중요성과 주관적 중요성인데 전자에 대해 피보험자가 해당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믿고 있던 선의라도 합리적인 보험자에 있어 중요하면 의무위반이 되는 경우도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정보의 편재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면 적용의 근거를 결여하는 것이다. Mansfield경이 예외로서 언급한 사례(MIA 제18조 제3항)는 정보가 편재된다고 볼 수 없는 사례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영국보험법의 시행으로 최대선의의 무가 폐지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오로지 하나만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규제규정도 다양화되지만 그 규범성의 근거는 불변이다. 따라서 정보의 편재가 없으면 고지의무위반의 여러 효과도 당연히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다.

## 2. 중요한 것이 고지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질문할지 여부에 대한 조사

보험자는 이 보험이 차석총독인 Carter를 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차석총독은 Fort M.의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거점장인 Carter가 보험을 부보하고 있는 이상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것도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질문하지 않았다. 이것에 의해 정보고지의무를 자신이 포기한 것이 된다. 이 정보는 Carter 이외에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사하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보험자가 인수할 때 수동적인 자세로 사고

발생 후 당초의 고지의 미비를 찾는 자세에 대해 강한 비판이 있었으며(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2014), 계약체결 전의 고지의무에 대해 2015년 영국보험법에서 커다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거기서도 기본적인 전제는 보험자가 의문을 가지는 정도의 고지가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부분을 해석하면 Mansfield 경이 보험자에게 일정한 주체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에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100년 정도 이후인 19세기 후반의 여러 판례에서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Lowry, 2009).

이 보험자에게 적극적인 조사의무·질문의무를 부과할지의 문제는, 즉 어디까지를 보험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지(더욱이 오히려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지의무의 포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의 분기점이다. 최근 인공지능을 포함한 IT와 인터넷의 발전은 보험자의 정보수집·분석력을 가속도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보아 종래의 정보격차를 그대로 전제로 하는 것에 의문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Rose, 2007). 사실 이 논의는 새롭고 오래된 것이며 로이즈 보험조합이 Lloyd's Intelligence Service를 비롯한 정보네트워크를 세계에 구축하고 때로는 피보험자보다 빨리 정보를 습득한 사례도 적지 않다. Carter v. Boehm 사건에서 50년 후의 Fire v. Woodhouse 사건에서는 보험자는 공평한 조회와 상당한 주의로 (예를 들어 시장의 정보원인 Lloyd's List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여 고지의무위반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Bates v. Hewitt 사건을 비롯한 19세기 후반의 여러 판례가 보험자의 소극적인 자세를 용인하기에 이르렀다(Lowry, 2009).

이 변천의 문맥을 보면 18세기에 Mansfield 경이 희망한 보험자의 자주적인 조사가 19세기 후반의 보험 거래량의 증대로 현실적이지 못하게 되어 공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실무가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시대의 요청으로 기준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 같이 불변의 기준은 없는 것이지만 보험상품의 형태도 다르며 즉, 정형대량형의 인수를 하는 보급형의 보험상품(예, 통상의 화물보험) 등과 특수한 상품,



프로젝트를 위한 보험과의 차이가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할 수준을 결정하는 커다란 주안점이라는 것도 과거나 이제나 변함이 없다고 본다. Charles Boehm이 인수한 보험은 고객 맞춤형의 보험으로서 그 외에는 같은 것이 없는 당시에서도 특수한 보험이었지만, 보험자가 알고 있어야 할 수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이 점에서 Carter v. Boehm 사건에는 인수단계에서의 보험자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하는 2015년 영국보험법 개정의 기본발상이 포 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3. 고지의무를 위반한 선의의 계약자도 일정하게 보호할 필요성

선의의무의 위반의 효과로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구제가 실질적으로 일방적이며 또한 피보험자에 대한 취급이 가혹하며 균형을 상실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Mansfield경은 사실 이 점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Carter에게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 부보지사의 편지를 수송한 것과 같은 선박으로 동인도 회사에 알고 있는 것은 모두 보고하였으며 2월까지 통상의 상행위를 하고 있던 그의 행동에서도 알 수 있다. 이 규칙(고지의무위반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의 목적은 사기를 막고, 선의를 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Carter v. Boehm 사건에서 보험자의 주장을 인정하면 반대로 사기의 도구가 되게 된다.

보험자는 Carter가 Fort M.의 구체적인 상태를 알고 있으며 어떤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그 위험을 느낄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보가 고지되지 않았지만 질문하지 않고 보험을 인수한 것이다. 그런데 고지는 하지 않았지만 무효의 이유로서 충분하다면 사기방지를 위한 규칙이 사기의 도구가 되게 된다.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4%의) 보험료를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보험료를 완전히 벌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

여 최악의 사태에 대비할 생각이었던 Carter에게 거짓의 안심을 시킨 것이 된다. 인도 정세와 Fort M.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고지가 없는 중에 불고지가 무효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비밀의 의도(유사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를 마음속에 숨긴 상태로 사인을 하여서는 안 된다.

2015년 영국보험법의 개정 배경의 하나이었던 향후의 추세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실이 나중에 대두될 것에 대한 우려(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2014)를 Mansfield경은 1766년의 단계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Mansfield경이 Governing Principle 이라고 설명한 선의의무는 보험자·피보험자 상호의 의무라는 견해와 일치할 것이다.

### 4. MIA 제18조와 관계

MIA 제18조는 Mansfield경의 판결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Mansfield경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사실 제18조 제(3)항의 부분이며 제(1)항과 제(2)항의 부분과 그 규범성의 근거의 설명은 제18조 제(3)항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Jeon Hae-Dong and Shin Gun-Hoon 2016; Lee Jung-Won, 2016; Lee Yun-Seok, 2010). 보험계약 성립 전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소급하여 무효라는 것은 이미 그 시점에서는 확립되어 있었으며 Carter v. Boehm 사건에서의 실로 새로운 개념은 예외의 명시이었던 것이다. MIA의 성문법화의 과정에서 이 문맥이 누락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MIA 제18조 제(1)항만을 주시하기 쉬우며 제(3)항은 분명한 예외라고 보기 쉽지만, 사실 양자는 같은 중요성을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MIA 제정 이전의 법의 적용은 당초 Mansfield경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좁게 그 예외를 파악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설명한 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피보험자의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2015년 영국보험법의 개정은 대개의 점에서 계약 성립 전의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원점인 Mansfield경의 Carter v. Boehm 사건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영국보험법의 시행으로 MIA 제17조의 최대선의의무는 폐지규정이 되고 있으며 그 위반의 효과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한다는 것도 폐지되고 있는데(2015년 영국보험법 제14조), 과거에는 이 의무가 보험관계자간에 과대평가되어 왔다는 문제제기를 하였다.

MIA 제17조상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무에 기초한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점인 Carter v. Boehm 사건의 문맥은 계약 성립 전의 선의의무·고지의무에 한정되는 것이며 더욱이 선의에 기초한 계약이라는 문구는 고지의무의 한계와 예외를 설명하기 위한 개론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MIA 제17조에 이어 제18조-제20조가 모두 계약 전의 의무와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보아 본래 제17조는 계약성립 전으로 한정하여 규정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MIA 제17조로 인해 계약 성립 후의 부작위와 부실표시가 보험계약을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점은 2000년대 초까지 논쟁되었다(Gilman, et al., 2013). 또한 Star Sea호 사건에서 Clyde경도 MIA 제17조의 규정은 계약체결 전으로 한정한다고 보면 모순이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 판례가 누적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 성립 후는 선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규정하면 되겠지만 계약 성립 후는 특약이 없는 한 적극적인 고지는 요구될 수 없으며, 또한 부정과 부실표시는 별도의 법원칙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다. Carter v. Boehm 사건에서 Mansfield경도 3년 계약 성립 후는 2년째까지의 어떤 상황의 고지도 필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험자의 주장을 각하한 Carter v. Boehm 사건에서는 고지의무위반의 한계 및 예외가 이유이며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대선의의라는 문구의 영향에 매혹된 것인지 최대선의의무가 보험계약에 있어 모두에 우선하는 개념으로서 취급되어 왔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험제도가 모든 관계자의 신의에 기초하여 비로소 성립한다는 것에 이론(異論)은 없다. 그러나 MIA 제17조에서 말하는 최대선의의무는 과거의 판례로 되돌아가 생각해 보면 계약 성립 전의 정보고지라는 한정된 국면에서 더욱이 일정한 한계가 있는 의무이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최대선의의무는 보험계약 성립 전이나 후에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원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직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소송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사기적 수법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때 보험자 측에서 불 때 보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진정한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허위로 유인한 경우 이러한 사태를 유발한 피보험자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하여야 할지의 문제는 그다지 쉬운 것만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하였지만 명확하게 해결하지 못하였고 영국 법률개정위원회는 결국 성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을 하여 법령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 법원이나 법령을 볼 때 위와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법체계를 정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상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 법제를 정비함에 있어 영국 법원의 보통법 또는 법률개정위원회의 권고사항은 하나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최대선의의무의 기원이 된 Carter v. Boehm 사건을 중심으로 최대선의의무에 대한 판단내용을 분석하였는데, 이 사건 후 영국보험법의 110년만의 개정의 시기에, 최대선의의무의 효과에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할 것인지 또한 보험계약 성립 전의 고지의무의 한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지, 더욱이 최대선의의무란 무엇인지를 고려함에 있어 이 사건의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 References

- Atiyah, P. S. (1995), *An Introduction to the Law of Contract*(5th ed.), Oxford: Clarendon Press.
- Bennett, H. N. (1999), "Mapping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 Law",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p.179-190.
- Chae, I-Sik (2003), *Lecture of Commercial Law*, Seoul: Parkyoungsa.
- Chalmers, M. D. and D. Owen (1913),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2nd ed.), London: Butterworth & Co.
- Choi, Jun-Sun (2005), *Insurance Law-Maritime Law*, Seoul: Samyoungsa.
- Choi, Mi-Soo (2017), "A Study on the Effect on Breach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Trade Insur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8(2), pp.215-239.
- Chung, Dae (2005), "A Study on the Star Sea Case in England and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Maritime Law Review*, 17(2), p.109-131.
- Clarke, M. and B. Soyer (2017), *The Insurance Act 2015: A New Regime for Commercial and Marine Insurance Law*, NY: Informa Law from Routledge.
- Clarke, M., Burling, J. M. and Purves, R.L (2009),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6th ed.), UK: Informa Law from Routledge.
- Colledge, J. J. and B. Warlow (2006), *Ships of the Royal Navy: The Complete Record of all Fighting Ships of the Royal Navy*(Rev. ed.), London: Chatham Publishing.
- Gilman, J., Merkin, R., Blanchard C. and Templeman, M (2013), *Arnould's Law of Marine Insurance and Average*(18th ed.), London: Sweet & Maxwell Ltd.
- Han, Chang-Hi (2017a), "A Study on English Revised Disclosure Duty", *Journal of Law*, 30(1), pp.393-431
- Han, Chang-Hi (2017b), "Utmost Good Faith Doctrine of the Policyholder under the English Insurance Act 2015", *Journal of Law*, 34(3), pp.369-395.
- Han, Nak-Hyun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of U.K. and U.S. in Marine Insurance Contract", *Journal of Claim Adjustment*, 2(2), pp.75-106.
- Hosi, Makoto (2015a), "UK Insurance Act 2015-Review of Major Revisions and Impact on Practice -", *Kaizihoukennkyuukai*, 228, pp.23-34.
- Hosi, Makoto (2015b), "Treatment of Unjustifiable Claims of Insurance Claims in UK Law", *Songaihokennkenkyu*, 77(1), pp.45-78.
- Jeon, Hae-Dong and Gun-Hoon Shin (2016),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for Reforming the MIA 1906 and Comments on them-Focusing on the Insurance Act 2015-",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69, pp.407-426.
- Jeong, Hae-Seok and Yeong-Seok Cheong (2015), "Recent Development of the "Non-Disclosure" and "Breach of Warranties" Principle in MIA 1906", *Hanyang Law Review*, 32(1), pp.127-147
- Jin, Hong-Ki (2016), "Utmost Good Faith After the Formation of Contract Under English Insurance Law and its Implication to our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7(3), pp.201-228.
- Jung, Chan-Hyung (2005), *Lecture of Commercial Law*(7th ed.), Seoul: Parkyoungsa.
- Kim, Jin-Woong (2007), "Overview of US Partnership and Consideration of Introduction of Partnership Taxation System", *Tax Study*, 7, pp.275-299.
- Kim, Sun-Chul and Kil-Nam Lee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Aspect of the duty of Disclosure in Korean Insurance and English Insurance Laws",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11(1), pp.309-331.

- Kim, Sung-Tae (2001), *Lecture of Insurance Law*, Seoul: Bummunsa.
- Kim, Seong-Wan (2015), “A Study on the Breach of Duty of Disclosure and Fraudulent Insurance Contracts”, *Financial Insurance Review*, 26(1), pp.3-50.
- Koh, Jae-Jong (2008), “A Historial Study on the Utmost Good Faith of the Insurance Contract”, *The Journal of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27(1), pp.155-182.
- Kurasawa, Kouichirou (2004), *Introduction to Insurance Law*, Tokyo: Sinseisyuppan.
-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2014), *Insurance Contract Law: 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Executive Summary*, Edinburgh: Law Commission and Scottish Law Commission.
- Lee, Gi-Soo, Byung-Gyu Choi, and In-Hyun Kim (2003), *Insurance Law-Maritime Law*, Seoul: Parkyoungsa.
- Lee, Jung-Won (2016), “A Review on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in The Insurance Act 2015”, *Maritime Law Review*, 28(2), pp.37-76.
- Lee, Yun-Seok (2010), “A Study on Utmost Good Faith and Disclosure Duty in Insurance Contracts”, *Hanyang Law Review*, 21(4), pp. 263-287.
- Lim, Soo-Min (2013), “Utmost Good Faith and Protection of Insurance Contracting Parties”, *Advanced Commercial Law Research*, 64, pp. 261-298.
- Lowry, J. (2009), “Wither the Duty of Good Faith in UK Insurance Contracts”, *Connecticut Insurance Law Journal*, 16(1), pp.97-156.
- Park, Yong-Sup (1999), *Marine Insurance Law*, Busan: Hyosung Publishing.
- Rose, F. D. (2007), “Informational Asymmetry and the Myth of Good Faith: Risk Basis”,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p.194-209.
- Saffarini, B. (2016), *The Marine Insurance Handbook : An Exploration and In-Depth Study of Marine Insurance Law and Clauses Paperback*, Bahaeddin Sffarini(ACII).
- Shin, Gun-Hoon (2006), “The Scope of the Continuing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The Journal of Korea Maritime Law Association*, 28(2), pp.155-203.
- Shin, Gun-Hoon (2011a), “Main Trends for Reforming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English Insurance Contracts Law—Focused on the Policyholder's Pre-Contractual Duty in Insurance Contracts for Business”,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49, pp.257-281.
- Shin, Gun-Hoon (2011b), “Main Trends for Reforming Marine Insurance Law in England- Focused on the Insurer's Post-Contractual Duty of Utmost Good Faith-”,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2(3), pp.41-74.
- Soyer, B. (2003), “Continuing Duty of Utmost Good Faith in Insurance Contracts Still Alive?”, *Lloyd's Maritime and Commercial Law Quarterly*, pp.39-45.
- Tamura, Jyunnosuke and Hiraide, Yosimichi (2003), *Insurance Law-Maritime Law*, Tokyo: Aobayasisyoimn.
- Thomas, D. R. (1996),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London: LLP.
- Winfield, R. (2007), *British Warships of the Age of Sail 1714-1792: Design, Construction, Careers and Fates*, Seaforth Publishing.
- Yamano, Yosirou and Yamada, Yasuhiko (2004), *Modern Insurance-Maritime Law(6th ed.)*, Tokyo: Chuoukeizaisya.